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138
----------	------

제안연월일 : 2025년 9월 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5년 8월 11일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2호)에 대하여 제33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5.9.8.)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현행 제20조의 ‘출연기관’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개정안에서는 모성·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법인인 ‘출연기관’에 대한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제25조의2를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으로 개

정하여 출연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으로 수정함(안 제20조)

나. 모성·부성 권리보장의 주체를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여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 보장을 신설함(안 제25조의2).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대안
제20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u><신 설></u>	제20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 ----- <u>「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u> ----- ----- -----. <u>제25조의2(모성·부성의 권리 보장)</u> <u>시장·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u> <u>의 장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u> <u>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u> <u>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u> <u>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u> <u>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